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기본계획

※ 본 기본계획은 관계 법령 및 교육부 지침, 우리대학 학칙 개정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전 우리대학 입학처 홈페이지(ipsi.dongguk.edu)에서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 **재외국민** : 54명 (입학정원의 2%)
(★ 학과신설 : 문화재학과 1명 / AI융합학부 1명 모집 포함)
-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각 80명 (최대모집 가능인원)
(★ 학과신설 : 문화재학과 각 2명 / AI융합학부 각 3명 모집 포함)

세부 모집인원

- [재외국민]**
▶ 2023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33명 / 자연 21명 (입학정원의 2%)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2023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49명 / 자연 31명 (최대모집 가능인원)
- [북한이탈주민]**
▶ 2023학년도 : 인문·영화영상 47명 / 자연 33명 (최대모집 가능인원)

세부 지원자격

- [재외국민]**
 - ▶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학년 포함 중·고교과정 3년 이상
 - ▶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북한이탈주민]**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반영비율

▶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공통

구분	계열	과목(반영비율)	비고
1단계	인문계/영화영상	국어(50%) + 영어(50%)	필답고사
	자연계	수학(50%) + 영어(50%)	
2단계	전체	서류심사(Pass/Fail)	서류심사

전형방법

- ▶ 인문계·자연계·영화영상
 - 1단계 : 필답고사 100%
 - 2단계 : 서류심사 100%

필답고사
범위 및 수준

- ▶ 교과서 및 EBS교재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1.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가. 모집구분 및 선발인원

모집구분		인문계/ 영화영상	자연계	합 계	비고
재외국민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자의 자녀	33명	21명	54명	모집단위별로 선발, 신입생 입학정원의 2% 이내 (정원외 모집)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49명	31명	-	모집단위별로 최대모집 가능인원 (정원외 모집)
북한이탈주민		47명	33명	-	

※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을 불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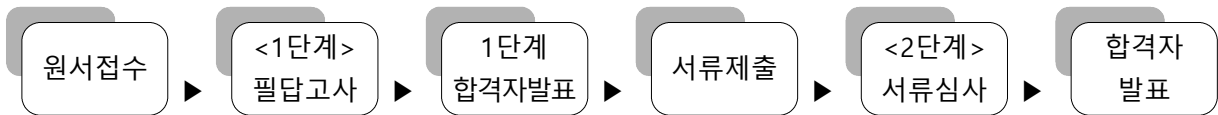
나. 전형방법

▶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모두 계열에 따른 동일한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적용

계열구분	전형형태	필답고사 과목 및 반영비율		서류심사	비고
인문계 · 자연계 · 예체능(영화영상학과)	1단계	인문계/ 영화영상학과	국어 50% + 영어 50%	-	5배수 선발
		자연계	수학 50% + 영어 50%	-	
	2단계	-		P/F	

다. 전형절차

▶ 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학과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 집 단 위		계 열	모집인원	최대모집	가능인원
				재외국민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북한이탈 주민
불 교	불교학부		인 문	-	1	1
	문화재학과 ★			1	2	2
문 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 문예창작학	인 문	2	2	2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 영어통번역학		2	3	3
	일본학과			1	2	2
	중어중문학부			2	5	5
	철학과			-	1	1
	사학과			1	2	2
이 과	수학과		자 연	1	2	2
	화학부			1	2	2
	통계학과			1	2	2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 반도체과학		1	1	1
법 과	법학과		인 문	2	3	3
사 회 과 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	인 문	2	2	2
		행정학		2	2	2
		북한학		-	1	1
	경제학과			1	2	2
	국제통상학과			2	3	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		-	1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2	3	3
	식품산업관리학과			-	1	1
	광고홍보학과			2	2	3
사회복지학과		-	1	1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경찰학, 산업보안, 범죄과학, 교정학	인 문	3	3	-
경 영	경영학과		인 문	3	3	3
	회계학과			1	1	1
	경영정보학과			1	1	1
바이 오 시스템	생명과학과		자 연	-	1	1
	바이오환경과학과			-	1	1
	의생명공학과			1	1	2
	식품생명공학과			1	1	1
공 과	전자전기공학부		자 연	3	3	3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		3	3	3
		정보통신공학		1	1	2
	건설환경공학과			-	1	1
	화공생물공학과			2	2	2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2	2	2
	건축공학부	건축공학, 건축학		-	1	1
	산업시스템공학과			1	2	2
	멀티미디어공학과			-	1	1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1	1	1		
사 범	국어교육과		인 문	1	-	-
	수학교육과		자 연	1	-	-
예 술	영화영상학과		예 체 능	2	2	2
SI융합학부 ★			자 연	1	3	3
계				54	-	-

※ 상기 모집인원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집요강」에서 모집인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21.03.기준 신설학과(학부)임.

※ **SI융합학부**는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는 독립학부임

모집관련 유의사항

- 지원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지원하기 바랍니다.
- 1) 사범계열 및 교직설치학과는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전공과목, 교직과목,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우리 대학 『교직과정 이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할 것
- 2) 경찰행정학부 지원자 중 경찰 또는 공안기관 등에 진로를 희망하는 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등의 임용자격을 참조할 것
- 3) 불교대학은 신입생 전원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되, 타 학과로 전과는 불가(복수전공은 가능)
- 4) 바이오시스템대학은 서울 본교 소속 바이오메디캠퍼스(고양시)에서 수업이 이루어짐
- 5) 학부 중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물리·반도체과학부, 경찰행정학부, AI융합학부는 졸업시점에 전공을 결정하고, 영어영문학부, 건축공학부는 2학년 진급 시 전공 결정
- 6) 영화영상학과는 예체능계열이나 실기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인문계열과 같은 방식으로 선발함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충원 시 충원 원칙

- 각 모집구분의 특정 모집단위에서 모집인원 만큼 합격자를 충원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과 순서에 따라 충원합니다.
- 1) 해당 미충원 모집단위가 속한 학부 내 타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또한, 다른 모집단위에서 1명을 이월 받은 적이 있는 모집단위에 추가로 충원 기회가 올 경우 다음 순위의 모집단위에게 그 기회를 순차적으로 이월함
(예시 : 정치행정학부의 행정학 전공 미충원 시 정치외교학 전공에서 우선 충원하되, 미충원 시 북한학 전공에서 충원해야 하나 북한학 전공 정원이 15명이므로 학부(과) 정원의 10%를 초과하여 충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경제학과로 충원 우선순위를 이월함)
- 2) 1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과대학 내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함
- 3) 1번, 2번 원칙으로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 내 단과대학 및 모집단위 건제순으로 1명씩 순차적으로 충원함 (※ 영화영상학과 미충원 시에는 인문계열 건제순으로 충원함)
- 전제 조건 : 재외국민의 충원합격자 모집단위별 최대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원의 10% 이내로 합니다. 각 모집단위(학부, 학과)별 정원은 우리 대학 금년도 수시와 정시의 정원내 모집인원 합계로 합니다(모집요강 참조).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원서접수(공통)	2022년 7월 4일(월) ~ 7월 8일(금) 중 3일 이상
1단계 필답고사(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	2022년 7월 ~ 8월 예정
1단계 합격자 발표(인문계, 자연계, 영화영상)	
서류제출(1단계 합격자)	
서류심사(지원자격 심사)	
최초합격자 발표(공통)	2022년 8월 예정
합격자 등록예치금 납부	2022년 12월 예정

4. 필답고사 및 서류심사 안내

가. 필답고사 안내

계열	과목	형식 및 범위	
인문계 · 영화영상	국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내용과 범위 ※ 객관식으로 출제하며, 수학은 수학, 수학1, 수학2 범위 내에서 출제	● EBS교재를 활용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자연계	수학		
공통	영어		

나. 서류심사 안내

- ▶ 지원자 제출서류 검토 및 지원자격 심사

5. 지원자격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3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고등학교 졸업년도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자격 구분	세부 구분/특기사항	자격 요건
재외국민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자의 자녀	
	정부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교육, 출장을 목적으로 체류한 자의 자녀 (※ 유학생의 자녀 제외)	
	국외 선교사의 자녀	
영주권 취득 국외 교포 자녀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우리나라 초·중·고(6-3-3)와 12년 교육연한을 기준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및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이와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 검정고시 지원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개정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도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지원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자의 국외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국가 근무기간 내에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 ▶ 국외근무기간 :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 ▶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 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자격 구분	최소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학 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3년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3/4	3년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2/3	학생 국외재학 기간의 2/3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 1)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교 1개년을 포함한 최소기간을 의미합니다.
- 2)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 3)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4)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이며,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재학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 5)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7. 자격인정 공통사항

가.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불인정)
- 3)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교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4)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 1)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고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자격요건 인정기간입니다. (보호자(부모) 근무와 학생의 재학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요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3)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 4)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		■		■		■		■		■		■		■		■		■		■		■		23개 학기
국외 학교	■		■		■		■		■		■		■		■		■		■		■		■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		■		■		■		■		■		■		■		■		■		■		■		22개 학기
국외 학교	■		■		■		■		■		■		■		■		■		■		■		■		

※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하며, G11-1의 누락은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5)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 일부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단 해당 1개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6)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다. 자격인정 기준시점 - 외국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 분	지원자 재학·체류 자격종료시점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자격종료시점	비 고
기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2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자(일본 등)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지원자 2023년 3월 졸업예정일	조건부 합격자

※ 단,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본인과 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필답고사에 합격하여 졸업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라.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1)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외국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국외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국외근무·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 1)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 내부적인 심사 이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8. 재외국민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 ▶ 13년 이상 학제인 외국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12년 학제인 외국 고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 12년 미만 학제인 외국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나.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Blue shading]																																	23개학기
	외국학교																																		
B	국내학교	[Blue shading]																																	13학년제 → 12학년제 혼 합이수
	외국학교 (13학년제)																																		
	외국학교 (12학년제)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구분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C	국내학교	[Blue shading]																																23개학기 미달
	외국학교																																	
D	국내학교	[Blue shading]																																고교 1개 학년미달
	외국학교																																	
E	국내학교	[Blue shading]																																11년제
	외국학교																																	

9.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가능)
-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 1)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나. 기타

- 1)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제출서류 목록

번호	구분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비고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정부유치 과학자/교수 요원	현지법인 근무자	현지자영업자	교육출장 목적 체류자	국외선교사	국외영주 교포의 자녀		
1	입학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2	서류심사 지원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3	학력조회 동의서	○	○	○	○	○	○	○	○	○	○	인터넷 접수시 서식 다운로드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5	초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 재학기간 명기 •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
6	중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7	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	○	○	○	○	○	○	○	○	○	○	
8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	○	○	○	○	○	○	○	○	※ 각주 참고
9	보호자 재직증명서	○	○	○	○	○		○	○	○		국외근무기간 명기
10	정부초청 추천서			○	○							
11	국외파견 교육·출장관련 증명서							○	○			
12	국외지사 설치인증서 또는 국외직접 투자신고·수리서 사본		○									
1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사본					○						
14	사업자 등록증(해당국) 사본							○				사업기간 명기
15	보호자 현지법인 법인세 납부증명서					○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 법인세 납부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 세금납입 증명서 제출
16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				지원자격기간 마지막날 기준 역산하여 3년치
17	영주권 사본(학생, 부, 모)									○		영주권 취득일이 반드시 명기
18	여권 사본(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19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20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 발급신청에 대한 위임장(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본교 소정서식
2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학생, 부, 모)	○	○	○	○	○	○	○	○	○	○	학생만 현지 영사관 또는 온라인 발급
22	주민등록말소등본										○	
23	보호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		
24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의 경우 제출
25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해당자만 제출										중국인의 경우 중국공증처에서 공증한 원본
26	제3국 수학인증서	해당자만 제출										보호자 근무 현지 한국영사관

※ 외국고교 학사일정표 : 해당 외국학교의 학사일정(학기시작 및 종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와 상응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및 브로셔 등도 가능(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 표기) /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나. 북한이탈주민 제출서류 목록

- 1) 입학원서 1부
- 2) 북한이탈주민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 1부
- 3) 학력확인서(거주지 시·군·구 기관장 발행/국내고교 출신자가 아닌 경우) 1부
- 4) 고교졸업(예정)증명서(국내고등학교 출신자에 한함) 1부
- 5) 검정고시 합격증서(검정고시 출신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모집요강 발표 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1) 1단계 전형 합격자만 서류를 제출합니다. 정해진 서류제출 기간 이전에 제출한 서류는 분실 염려가 있으므로 기간엄수 바랍니다.
- 2)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 본교 입학실에 원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원본대조필>을 받은 후 사본을 제출하고, 최종합격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근무·체류기간 관련서류는 <지원자격요건 충족기간> 이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학생부)는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총 수학기간 확인을 위하여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4) 모든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 국외의 발급 서류는 국외에서의 재학·근무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합니다.
- 5) 제출서류별로 성명이 다를 경우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이 발행한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6)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영어 이외의 국외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7)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8)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9)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본교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0)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기준이 미달할 경우 사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11) 조건부 합격자는 고교졸업증명서, 고교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과 보호자(부모)의 근무·거주·체류 관련 모든 서류(보호자 재직증명서, 보호자 세금 납입증명서, 국외파견 교육·출장 관련 증명서 등) 중에서 본인 해당서류를 졸업 직후 입학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혹은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부모)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문의 및 연락처

구 분	내 용
문의처	서울캠퍼스 입학실
연락처	전화 : (02)2260-8861 / FAX : (02)2260-3696
주 소	(04620)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본관 1층 동국대학교 입학실